# 

### 감사목적

● 민간보조 단체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·점검 및 감사를 통해 향후 보조금 관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운동의 민간 확산을 도모.

## 감사 개요

#### 1. 감사 근거

-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- O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자체감사의 종류)
- O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」 제5조(감사의 범위)
- O 2015년 감사 종합계획 【감사실-7411(2014.12.15)】

### 2. 감사 개요

○ 감사기간 : 2015. 5. 7. ~ 5. 14.

○ 감사대상 : 目目目目회

○ 감사범위 : 2013. 1. 1 ~ 2015. 4. 30

O 감사 중점사항

-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실태

-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및 합법성 등

○ 감사반원 : 1개반 3명

## Ⅱ 감사 결과

### 1. 지적사항 목록

연번	지 적 사 항	처분내역		비고	
		행정상	재정상(원)	신분상	оп
1	정산검사 결과 등에 따른 지시사항				자체정관에 따라
	불이행	주의		3명	실무책임자,
					실무자 징계
2	보조사업비 지출업무 부적정	시정	환수 2건		
	(강사료 지급 부적정, 중식비 지출 부적정)		515,000		
3	차량임차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	시정			
	등 계약업무 부적정				

## 

##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

### □ 정산검사 결과 등에 따른 지시사항 불이행

-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(교부조건)와 제21조(교부 결정통지) 및 제26조(정산검사)와 제27조(감독)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 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, 서류 또는 그 사업내 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- 그러나 目目目目회에서는 행사개최 시 사업의 개요, 내역 등을 명시한 자체계획서를 수립 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정산검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어 "경고" 조치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.
- ▶ ▶ 처분요구 : 행정상 **주의**, 신분상 **자체징계(3명)**

#### □ 보조사업비 지출 업무 부적정

-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3조(용도 외 사용금지 등)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.
- 그러나 目目目目회에서는 2013.5.3.일 실시한 ♣️♠️ ●️ 현존 방문 점심 식사를 하였음에도 2013.5.3. 18:10 논현동 소재 식당에서 점심식사 항목으로 체크카드로 315,000원을 사용하였으며
- 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지침에 의하면 단체 소속 회원에게는 강사료 지급이 불가하다.
- 그럼에도 目目目目에서는 2013.12.19.일 실시한 율곡강좌에서 당시 해당 지회 사무국장인 ■■■에게 강사료 200,000원을 지급하였음.
- ▶ ▶ 처분요구 : 행정상 **시정**, 재정상 **환수(2건 515,000원)**

#### □ 차량임차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계약 업무 부적정

- 부가가치세법 제32조(세금계산서 등)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(이하 "세금계산서"라 한다)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  - 1.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
  - 2.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
  - 3.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
  - 4. 작성 연월일
  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그러나 目目目目회에서는 →→ 등 차량임차 시 계좌이체 처리한 12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신고 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8건(누락 부가가치세 463,739원)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

받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지 못하였다.

-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제121조(계약의 체결)에 의하면 계약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 48호 내지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그럼에도 → 권학 등 아래 1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버스임차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회계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
- 차량임차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책임한계 및 보상 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, 계약자와 임차료 계좌 이체자가 서로 다른 건이 7건 발생하여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계좌 이체하였다.
- ▶▶ 처분요구 : 행정상 **시정**